

#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 업 무 협 약 서

성동구와 관내 종교기관인 꽃재교회, 성광교회, 성답교회, 신금호교회, 미타사, 밀각심인당, 왕십리성당, 금호1가동성당(평화의집) 그리고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성동구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성동구의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간 공동노력
- 나.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상호간 홍보활동 연계
- 다. 자살의시도자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상호 협조
- 라. 자살사망자 유족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한 공동노력
- 마.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 논의

제3조(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원칙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기밀유지)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제 7조(효력) 본 협약은 상호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1월 27일

#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 업무협약서


 성동구 구청장 정원오


 기독교대한감리회 꽃재교회 담임목사 김성복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담임목사 남윤석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답교회 담임목사 김종균


 대한예수교장로회 신금호교회 담임목사 공 훈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주지 성현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진각종 밀각심인당 정사 수각

 천주교서울대교구 천주교 금호1가동교회(평화의집) 신부 안태오

 천주교서울대교구 천주교 왕십리교회 시니어아카데미학장 이연옥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안동현

#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의료계 업무협약서

성동구와 관내 의료단체인 성동구의사회, 성동구약사회, 성동구한의사회 그리고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성동구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성동구의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간 공동노력
- 나.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상호간 홍보활동 연계
- 다. 자살의시도자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상호 협조
- 라. 자살사망자 유족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한 공동노력
- 마.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 논의

제3조(의무사항)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원칙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기밀유지)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 7조(효력) 본 협약은 상호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1월 27일

#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의료계 업무협약서



성동구 구청장 정원오

---



성동구의사회 대표 이영환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SEOUL KOREAN MEDICINE  
DOCTORS' ASSOCIATION

성동구한의사회 대표 이성훈

---



대한약사회 성동구 약사회 대표 양 호

---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안동현

---